

2025학년도

중학교무시험입학

배정업무시행계획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GYEONGGIDO ICHEON OFFICE OF EDUCATION

목 차

I. 근거	1
II. 목적	1
III. 추진방침	
1. 중학교 입학지원 자격 및 대상	1
2. 중학군 및 중학구	1
IV. 추진일정	4
V. 배정 원칙 및 방법	
1. 배정 원칙	6
2. 배정 방법	6
3. 중학군(구역) 현황	7
4. 전산 추첨 방법	8
VI. 배정 업무 관리	
1. 배정 관리	9
2. 지원 방법	9
3. 배정원서 교부 및 입력	9
4. 배정원서 접수	10
5. 배정 업무 일정	11
6. 배정원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1
7. 우선 배정자 입학업무 처리	13
8. 기타 배정자 입학업무 처리	15
9. 배정원서 이관요청 및 파기신청	15
VII. 중학교 재배정 절차	
1. 재배정 대상자	16
2. 재배정 원칙	16
3. 재배정 일정	16
4. 절차 및 구비서류	16
5. 유의사항	17
VIII. 초등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배정 절차	
1. 관련 근거	18
2. 적용 대상	18
3. 가해학생 중학교 배정절차	18
IX. 경기도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규칙	20
X.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중학교 입학·재학생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정	21

※ 서식모음	25
○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원서철 [서식 1]	27
○ 2025학년도 중학교 배정원서 [서식 2]	28
○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서 제출 현황(일반) [서식 3-1]	29
○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서 제출 현황(선배정) [서식 3-2]	30
○ () 중학군·구 지원자 명부 [서식 4]	31
○ 초등학교 학구 위반자 명단 [서식 5]	32
○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 재배정 원서 [서식 6]	33
○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이관요청 공문 [서식 7]	34
○ 중학교 입학 등록 상황 보고 [서식 8]	35
○ 배정포기서 [서식 9]	36
○ 체육특기자 심사원서(입학생용) [서식 10-1]	37
○ 체육특기자 학생·학부모 동의서 [서식 10-3]	38
○ 전·입학 학교장 동의서 [서식 10-4]	39
○ 추천서(실적특기자) [서식 10-6]	40
○ 추천서(추천특기자) [서식 10-7]	41
○ 체육특기자 학교장 거주지 확인서 [서식 10-8]	42
○ 체육특기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 10-9]	43
○ 최저학력제 학교장 확인서 [서식 10-10]	44
○ 체육특기자 지원자 명부 [서식 10-12]	45
○ 체육특기종목 지정 및 배정인원 수 신청서 [서식 10-13]	46
○ 쌍둥이 학생 지원현황 [서식 11]	47
○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배정 원서 [서식 12]	48
○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학교보관용) [서식 13]	49
○ 담임확인서(전 가족 미등재 시 교육지원청 제출용) [서식 14-1]	50
○ 담임확인서(각종 사유 확인용) [서식 14-2]	51
※ 202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배정업무 질의응답	52

I. 근거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제43조(입학자격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51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5조, 제9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경기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396호)
- 경기도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정(경기도교육규칙 제605호)
-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 중학군 및 중학구 고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23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II. 목적

2025학년도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무시험입학 대상자의 중학교 입학에 위한 합리적인 학생 배정 방법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중학교 입학 배정을 통하여 국가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III. 추진 방침

1. 중학교 입학지원 자격 및 대상

- 가.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2025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 가족이 이천시 중학군·구 안에 거주하는 자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에 해당하는 자
 - 타 지역에서 이천 지역으로 전입한 중학교 학령대상자
 -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이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이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자(취학의무 유예자)
 - ※ 위의 “거주” 라 함은 전 가족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를 말한다.

2. 중학군 및 중학구

- 가. 중학군: 이천중학군, 효양사동중학군
- 나. 중학구: 장호원중학구, 율면중학구, 설성중학구, 모가중학구, 마장중학구, 대월중학구, 백사중학구, 부발중학구

▶ 이천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별 중학교·초등학교 일람표

지역	학교군 중학구	중 학교		초 등 학 교	비 고
		남녀공학	단성학교		
이 천	이 천 중학군	설봉중학교 이천송정중학교 이천중학교 증포중학교	(여중) 이천양정여자 중학교	도암초등학교	도암초등학교 학구 중 도봉 1, 3리는 백사중학구와 이천중학군의 공동학구. 나머지 지역은 이천중학군 도지초등학교 학구 중 백사면 모전리는 백사중학구와 이천중학군의 공동학구. [단, 모전리 2-5번지 일원(백사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외] 표교초등학교 학구 중 마장면 장암2리, 호법면 안평 2~3리는 이천중학군
				도지초등학교	
				설봉초등학교 신문초등학교 안흥초등학교	
				이천남초등학교 이천단월초등학교 이천매곡초등학교 이천송정초등학교 이천초등학교 증포초등학교	
				표교초등학교 한내초등학교 호법초등학교	
효양 사동 중학군	이천사동중학교 효양중학교		신하초등학교 아미초등학교 이천가산초등학교 이천사동초등학교	이천사동초등학교 학구는 대월중학구와 공동학구	
대 월 중학구	대월중학교		대월초등학교 이천사동초등학교	이천사동초등학교 학구는 효양사동중학군과 공동학구	
마 장 중학구	마장중학교		마장초등학교 표교초등학교	표교초등학교 학구 중 마장면 장암 2리, 호법면 안평 2-3리는 이천중학군	
모가 중학구	모가중학교		송곡초등학교 진가초등학교	송곡초등학교 학구 중 설성면 수산리, 대죽리는 설성중학구	

백 사 중학구	백사중학교		도암초등학교 도지초등학교 백사초등학교	도암초등학교 학구 중 신둔면 도봉 1,3리는 이천중학군과 백사중학구의 공동학구 도지초등학교 학구 중 백사면 모전리는 이천중학군과 백사중학구의 공동학구, 단, 백사면 모전리 2-5번지 일원(백사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은 백사중학구. 추후 행정구역 변동 시 백사면 모전리 2-5지번 일원이 속한 행정구역은 백사중학구.
부 발 중학구	부발중학교		부발초등학교	
설 성 중학구	이천경남 중학교		설성초등학교 송곡초등학교 장천초등학교	설성초등학교 학구 중 설성면 제요1, 3리는 울면중학구 송곡초등학교 학구 중 설성면 수산리, 대죽리 장천초등학교 학구 중 설성면 자석 1리는 여주시 가남중학구
울 면 중학구	울면중학교		설성초등학교 울면초등학교 - 충북음성 - 삼성초등학교	설성초등학교 학구 중 설성면 제요1, 3리 삼성초등학교 학구 중 충북 금왕읍 호산리 2구 지역
장호원 중학구	장호원중학교		나래초등학교 대서초등학교 이황초등학교 장호원초등학교 - 여주시 - 송삼초등학교 점동초등학교	대서초등학교 학구 중 울면 송곡리는 충북 감곡중학구 송삼초등학교 학구 중 여주시 가남읍 송림리, 삼승리, 점동면 원부리(오미),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4리 점동초 학구 중 여주시 점동면 원부리(원양), 관한 1-2리는 여주시 점동중학구 및 충북 매곡 여자중학구, 장호원중학구의 공동학구, 여주시 점동면 성신 1~2리, 뇌곡 1~2리는 여주시 점동중학구와 장호원 중학구의 공동학구.
합계	15교			

IV. 202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업무 추진 일정(예정)

일 정	세부계획	일 시	비 고
1. 계획수립 및 공고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회의 (계획안 심의·확정)	2024. 10. 10.(목)	- 참석: 입학추첨관리위원회 - 장소: 이천교육지원청 3층 도담실
	중학교입학 배정업무 시행계획 공고	2024. 10. 14.(월)	- 각급학교 공문시행 및 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2. 배정 추진일정 설명회	신입생 입학업무담당자 회의	2024. 10. 17.(목)	- 참석: 6학년 부장(교당 1명 제한) - 장소: 이천교육지원청 별관 이섭대천홀
3. 학부모 설명회 결과 보고	학교별 학부모 설명회 결과 보고	2024. 10. 24.(목)	각 초등학교별
4. 일반 학교 배정원서 작성 및 점검	배정원서 작성 및 프로그램 입력	2024. 10. 28.(월) ~2024. 11. 1.(금)	각 초등학교별
	배정원서 접수	2024. 11. 5.(화) ~2024. 11. 8.(금)	- 접수처: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 학교별 접수일자 지정 예정
	배정원서 대조 작업(1차)	2024. 11. 13.(수) ~2024. 11. 28.(목)	
5. 선배정 대상자 심사 및 배정	특수교육대상자 선배정	추후 별도 공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교육과 자체공문시행)
	체육특기자 선배정	추후 별도 공지	체육특기자 심사 및 배치 (교육과 자체공문시행)
6. 추가 접수	추가 배정원서 접수(2차)	2024. 12. 16.(월)~ 2024. 12. 19.(목)	접수처: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7. 최종 점검	배정원서 대조 작업(2차)	2024. 12. 20.(금) ~2024. 12. 27.(금)	
8. 추첨 배정	컴퓨터 추첨 배정	2025. 1. 6.(월)	- 참석: 입학추첨관리위원회 - 장소: 별관 이섭대천홀
	학교폭력 가해학생 추첨 배정	2025. 1. 7.(화)	- 참석: 입학추첨관리위원장, 가해학생 및 보호자 - 장소: 별관 이섭대천홀

일 정	세부계획	일 시	비 고
9. 최종 협의 및 배정통지서 배부	배정 중학교 발표를 위한 사전 협의회 (배정결과 확인 및 통지서 배부)	2025. 1. 9.(목)	- 참석: 초 6학년부장 - 장소: 별관 이섭대전홀
	배정 중학교 발표	2025. 1. 10.(금)	- 배정통지서 배부 - 중학교 예비소집 참석 안내
	중학교별 예비소집	2025. 1. 13.(월)~	각 중학교별
10. 입학 등록	배정 학생 등록	2025. 1. 13.(월) ~2025. 1. 16.(목)	각 중학교별
	입학등록 상황보고(1차)	2025. 1. 17.(금)	각 중학교별
11. 재배정 원서 접수 및 배정	재배정 원서 접수	2025. 1. 20.(월) ~2025. 1. 24.(금)	접수처: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배정 컴퓨터 추첨	2025. 2. 5.(수)	- 참석: 입학추첨관리위원회 - 장소: 별관 이섭대전홀
	재배정 결과 발표	2025. 2. 7.(금)	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12. 재배정 입학 등록	재배정 학생 등록	2025. 2. 10.(월) ~2025. 2. 13.(목)	각 중학교별
13. 최종 보고	입학 등록 상황 보고(2차)	2025. 2. 14.(금)	각 중학교별

V. 배정원칙 및 방법

1. 배정 원칙

- 가. 중학교 무시험 입학 대상자의 배정은 중학군과 중학구로 나누어 무시험 배정한다.
- 나. 중학군 내 배정대상자는 학군 내 모든 학교에 대해 지망을 하고, 배정 방법에 따라 컴퓨터로 배정받는다.
- 다. 중학구 내 배정대상자는 실제 거주지가 속한 중학구의 학교에 추첨 없이 배정된다.
- 라.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등은 심의를 거쳐 우선 배정한다.
- 마. 보훈 대상자(국가 유공자 등) 자녀는 보훈처로부터 명단을 받아 우선 배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단, 학구위반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쌍둥이 학생은 본인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에 한하여 만이가 배정된 학교에 함께 배정할 수 있다.(추첨배정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 사. 다자녀가구(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의 경우, 실 거주지 중학군(구)에 속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단, 학구위반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아. 실제 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자(학구위반자)는 중학교입학배정 규정을 지킨 학생들을 배정한 후 가장 후순위로 배정한다.
- 자. 외국에서 초등 학력을 인정받고 중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는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배정한다.
- 차. 기타배정
 - 1) 전년도에 입학을 포기한 자는 전년도에 배정받았던 학교에 재배정한다.
 - 2) 중도 퇴학자는 재학했던 학교에 다시 배정한다.
 - 3) 교사인 부모와 같은 학교에 배정됐을 경우,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재배정을 통해 거주지 내 다른 학교에 배정한다.(단, 중학군 지원자에 한함.)

2. 배정 방법

- 가. 중학군 및 중학구에 속하는 입학 대상자가 배정원서를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교육장)에 제출하면,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교육장)는 배정원칙에 의거 해당 중학군(중학구)에 속하는 중학교에 배정한다.
- 나. 중학군 지원자는 지망순위에 따라 컴퓨터로 배정한다.
 - 1) 1지망 지원자가 학교 수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지망 학생 전원을 배정한다.
 - 2) 1지망 지원자가 학교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원칙에 따라 배정한다.
 - ① 다음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 1순위: 해당 중학군의 같은 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지망자
 - 2순위: 해당 중학군의 다른 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지망자
 - 3순위: 학구위반자

② 1순위에서 경합이 생긴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초등학교의 최종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배정하고, 최종 전입일에서도 경합이 생긴 경우에는 기점, 간격수 방법에 의해 컴퓨터로 추첨 배정한다.

※ 시행계획 상 최종전입일: 입학, 전학, 재취학, 취학 등으로 학적 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짜

③ 2순위, 3순위에서 경합이 생긴 경우에는 각각 기점, 간격수 방법에 의해 컴퓨터로 배정한다.

3) 1지망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2지망교에 배정하되 2지망교에 먼저 지원한(1지망한) 학생을 우선 배정한 후 남는 자리에 컴퓨터로 추첨 배정한다. 2지망에도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마지막 지망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배정한다.

다. 중학구 지원자는 추첨 없이 교육장이 학구 내 중학교에 배정한다.

3. 중학군(구역) 현황

중학군		중 학교	초 등 학 교	비 고
이천 중학군	A구역	설봉중학교 이천중학교 이천양정여자중학교(여)	설봉초등학교 신둔초등학교 안흥초등학교 이천남초등학교 이천단월초등학교 이천매곡초등학교 이천초등학교 표교초등학교 호법초등학교	표교초등학교 학구 중 마장면 장암2리, 호법면 안평 2~3리
	B구역	증포중학교	도지초등학교 증포초등학교 한내초등학교	도지초등학교 학구 중 백사면 모전리는 백사중학구와 이천중학군의 공동학구. 나머지 지역은 백사중학구.[단, 모전리 2-5번지 일원(백사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 급촉진지구) 제외]
	C구역	이천송정중학교	도암초등학교 이천송정초등학교	도암초등학교 학구 중 도봉 1, 3리는 백사중학 구와 이천중학군의 공동학구. 나머지 지역은 이천중학군.
효양 사동 중학군	A구역	효양중학교	신하초등학교	
	B구역	이천사동중학교	아미초등학교 이천가산초등학교 이천사동초등학교	이천사동초등학교 학구는 대월중학구와 공동학구

※ 근거리 배정의 원칙에 따라 중학군 내 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 초등학교 졸업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4. 전산 추천 방법(기점, 간격 수에 의한 추천 방법)

가. 모든 지원자에게 6단위 ‘고유번호’ 를 부여하여 추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다.

※ 학교번호(00)+학급번호(00)+출석번호(00)

나. 전산 추천은 지원자의 고유번호(6자리)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한 후, 기점(1~10)과 간격수(11~15)를 정하여 기점을 기준으로 간격수를 계속 더해가며 배정할 인원만큼 추천한다.

※ 기점과 간격수는 중학교입학추천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추천된 자가 입학추천 관리위원들의 임회하에 추천하여 정한다.

다. 지망학교의 배정은 중학교입학추천관리위원들이 추천한 기점과 간격수에 따라 학교별로 한다.

< 예 시 >

A 중학교: 정원 15명, 1지망 지원자 40명

- 기점: 9번
- 간격수: 11번

학생순/이름	배정순서					배정여부	학생순/이름	배정순서					배정여부
1							21				13	A중학교배정	
2		4				A중학교배정	22						
3	15					A중학교배정	23						
4							24		6			A중학교배정	
5							25						
6			8			A중학교배정	26						
7							27						
8							28			10		A중학교배정	
9	(1)					A중학교배정	29						
10					12	A중학교배정	30						
11							31		3			A중학교배정	
12							32				14	A중학교배정	
13		5				A중학교배정	33						
14							34						
15							35			7		A중학교배정	
16							36						
17			9			A중학교배정	37						
18							38						
19							39			11		A중학교배정	
20		2				A중학교배정	40						

Ⅵ. 배정업무 관리

1. 배정관리

교육장이 위촉한 추천관리위원으로 조직된 이천시 중학교입학추천관리위원회가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시행계획안을 심의한 후 확정되면 교육장은 그 계획안에 따라 입학 배정을 시행한다.

2. 지원 방법

가. 중학군에 속하는 초등학교의 지원자는 반드시 중학군 내 전체 학교를 지망해야 한다.

1) 이천중학군

- 지원방법: 남학생의 경우1~4지망, 여학생의 경우 1~5지망까지 모두 작성
- 지원학교: 증포중, 설봉중, 이천송정중, 이천중, 이천양정여중

2) 효양사동중학군

- 지원방법: 반드시 1~2지망까지 모두 작성한다.
- 지원학교: 효양중, 이천사동중

나. 공동학구에 속하는 초등학교의 지원자라 하더라도 2개 중학군(구)에 교차 지원은 할 수 없다.

다. 중학구인 지역의 지원자는 해당 중학교(1개교)에 지원한다.

라. 학구를 위반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마.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는 실제 거주지의 초등학교 통학 구역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3. 배정원서 교부 및 입력

가. 배정원서 작성 · 입력 기간: 2024. 10. 28.(월) ~ 2024. 11. 1.(금)

나. 원서 작성 및 교부 방법

- 1) 2025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의 배정원서는 담임교사가 직접 입력하며 **지원자와 보호자의 확인과 출신 초등학교장의 사실 확인 후**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 2) 2025학년도 전(前) **졸업생에 대해서는** 출신 초등학교장이 졸업대장과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조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이전에 중학교 무시험 입학에 의하여 배정되었던 자인지를 확인한 후 제출한다.
- 3)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는 우리교육지원청에서 교부 및 작성한다.

4. 배정원서 접수

가. 배정원서 접수 기간: 2024. 11. 5.(화) ~ 2024. 11. 8.(금)

나. 접수처: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성과관재팀

- 1)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해당학교 6학년 부장교사가 지참하여 인편으로 접수한다.**(선 배정 대상자도 배정원서 및 명단은 일반 배정대상자와 함께 제출)
- 2) 검정고시합격자, 해외귀국자녀 등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우리교육지원청에 직접 접수한다.

다. 제출 서류

- 1) 2025학년도 중학교 배정 원서철 [서식 1]
- 2) 2025학년도 중학교 배정원서(출력분-학생별 1부) [서식 2]
- 3)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서 제출 현황 1부 [서식 3-1, 3-2]
- 4) ()중학군·구 지원자 명부 1부 [서식 4]
- 5) 초등학교 학구 위반자 명단 1부[서식 5]
- 6) 주민등록등본 1부(2024학년도 전(前) 졸업자, 학구위반자 및 위장전입자, 검정고시 출신자, 전 가족 미등재의 경우)
- 전 가족 미등재 시(**학군지원자만 제출**): 학교에서 개별 사유 확인 후[서식13],
교육지원청에 담임확인서 제출[서식 14]
- 7) 선 배정 대상자 관련서류
가)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별도 공지
나) 체육특기자: 교육과 체육교육팀에서 별도 공지
다)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선 배정 대상자, 다자녀가구 선 배정 대상자:
행정과 중학교 입학 배정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
- 8) 쌍둥이학생 지원현황 1부[서식 11](쌍둥이학생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서식1],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2] 순으로 제출하되, 학구위반·선배정 지원 서류 등 추가 제출 서류 있는 학생의 경우 [서식2] 해당 학생 원서 바로 뒤에 첨부하여 학생별로 원서 제출

라. 출신초등학교와 실 거주지가 서로 다른 시·군인 경우의 배정원서 접수

- 1) 거주지의 행정구역이 이천이고 재학 중인 초등학교 소재지가 타 시·군인 경우
가) 거주지가 중학구에 속한 경우: 이천교육지원청에 원서 접수
나) 거주지가 중학군에 속하고, 재학 중인 초등학교가 중학구에 속한 경우:
이천교육지원청에 원서 접수
다) 거주지가 중학군에 속하고, 재학 중인 초등학교가 중학군에 속한 경우:
타 시·군 교육지원청에 원서 접수

- 2) 거주지의 행정구역이 타 시·군이고, 재학 중인 초등학교 소재지가 이천인 경우
 가) 거주지가 중학구에 속한 경우: 타 시·군 교육지원청에 원서 접수
 나) 거주지가 중학군에 속하고, 재학 중인 초등학교가 중학구에 속한 경우:
 타 시·군 교육지원청에 원서 접수
 다) 거주지가 중학군에 속하고, 재학 중인 초등학교가 중학군에 속한 경우:
 이천교육지원청에 원서 접수
- ※ 다만, 경기도 내의 타 시·군일 경우엔 지역교육청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바. 학교별 접수일자

일자	접수 대상 학교
11. 5.(화)	장호원초, 이황초, 나래초, 대서초, 점동초, 송삼초, 울면초, 설성초, 능산초, 장천초, 송곡초
11. 6.(수)	진가초, 마장초, 표교초, 대월초, 백사초, 도지초, 도암초, 부발초, 이천가산초, 신하초
11. 7.(목)	이천사동초, 아미초, 이천매곡초, 호법초, 이천단월초, 신둔초, 이천남초
11. 8.(금)	안흥초, 설봉초, 이천초, 이천송정초, 증포초, 한내초

5. 배정업무 일정

- 가. 중학군 입학 지원자 명부 확인(원서 대조작업)
 - 1차: 2024. 11. 13.(수) ~ 2024. 11. 28.(목)
 - 2차: 2024. 12. 20.(금) ~ 2024. 12. 27.(금)
- 나.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개최: 2025. 1. 6.(월) (컴퓨터 추첨·배정)
- 다. 배정결과 발표를 위한 협의회: 2025. 1. 9.(목) (교육지원청→학교 배정통지서 배부)
- 라. 배정결과 발표: 2025. 1. 10.(금) (학교→학생 배정통지서 배부)
- 마. 중학교 예비소집일: 2025. 1. 13.(월)~ (각 중학교 별)

6. 배정 원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가. 학교별 학교번호 추첨 및 학급, 개인별 번호 부여 방법
- 1) 초등학교별 학교번호 추첨: 2024. 10. 17.(목) 업무담당자 회의 시 학교 대표자가 추첨
 - 2) 학급번호 부여
 - 재학생: 해당 학급번호로 부여(예: 7반은 07)
 - 졸업생: 학급번호는 99로 부여
 - 3) 개인별 번호 부여
 - 재학생: 출석번호로 부여(예: 7번은 07)
 - 졸업생: 일련번호 부여

나. 배정원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이중 지원 방지

- 가) 초등학교에 보관된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여 중학교에 배정된 일이 있는 자가 배정되었던 학교 이외의 타 학교로 배정원서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나) 배정 시기에 6학년으로 전·입학한 학생은 전 재적교에서의 배정 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자나 중복지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다) 이중지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배정을 취소한다.

- 2) 지원자의 주소는 학교장 책임 하에 거주지 확인 후 실 거주지를 작성하며, 학구위반 및 위장 전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추후 위장 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배정이 취소되고, 교육장 직권으로 결원이 있는 학교에 임의 배정한다.)
- 3) 중학군(이천중학군, 효양사동중학군)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망교를 확인하고, 보호자와 지원자가 모두 서명·날인한다.
- 4) 배정원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 5) 초등학교장은 지원자의 배정원서[서식 2]와 지원자 명부[서식 4]를 작성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표지에 학교명, 고유번호, 인원수를 기재한다.)
- 6) 중학군과 공동학구에 해당하는 무시험입학 지원자는 지원자 명부의 지원학교란에 지망 학교를 기록한다.
- 7) 초등학교에서는 지원자의 전출, 전입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 정확하게 변동 사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누락자나 중복 배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거주지 이전 학생의 배정원서 이관요청 [서식 7] 등)
- 8) 배정원서는 중학교 입학지원자 전원이 제출해야 한다.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전 학년도 입학유예자(포기자) 등도 반드시 제출)
- 9) 배정과 관련한 민원이 학교 측의 잘못에 기인했을 때에는 학교장, 교감,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다. 학교 지망에 대한 각 학교별 학부모 설명회 실시

- 1) 학교별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응시원서 제출 전까지 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배정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 2) 중학군의 경우 수용가능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1지망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고 마지막 지망(이천중학군 남학생의 경우 4지망교, 이천중학군 여학생의 경우 5지망교, 효양사동중학군의 경우 2지망교)에도 배정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 3) 일단 배정되면 동일 학군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배정되지 않음을 반드시 알려 매년 반복되는 배정 불만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4) 부득이하게 설명회에 불참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 자료를 반드시 송부하여 추후 배정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없도록 한다.

(※ 2024. 10. 24.(목)까지 설명회 결과를 자료집계시스템으로 보고)

[보고양식]

학교명: OO초

일시	장소	참석인원	개별안내자료 송부 인원	불참인원에 대한 조치방법
		명	명	(예시: 개별안내 자료 송부)

7. 우선 배정자 입학 업무 처리

가. 특수교육대상자

1) 대상자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 중 심의하여 확정된 자
- 나)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및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으로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자

2) 학교 배정

- 가)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급이 설치된 중학교 배정을 원할 경우는 희망하는 근거리 중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 나) 특수교육대상자가 중학교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에 취학을 원할 경우에는 거주지로부터 희망하는 근거리 중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관한 업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별도의 공문을 시행하여 안내한다.

4)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서식은 교육과 별도 공문 시행)

- 가)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의뢰 명단 1부
- 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학생별 1부
- 다)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중 각1부(해당자에 한함)
- 라) 주민등록등본 각 1부(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제출하지 않고 거주지 확인 후 반환)
- 마) 기타 각종 검사 결과 증빙자료(상세한 기록이 필요한 경우)

나. 체육특기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 ①항, ③항)

1) 배정방법

- 가) 체육특기자 확정 및 학교배정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및 관리 규정」에 의거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후 종목별로 특기학교에 배정한다.

- 나) 체육특기자는 지역 특기자 정원 범위 내(입학정원의 3%)에서 우선 배정한다.
- 다) 체육특기자는 이천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확정된 후 배정한다. ※체육특기자는 배정받은 학교를 포기할 수 없다.
- 라) 체육특기자로 배정받은 자는 일반 배정자 명단에서 삭제하여 일반학생 추첨에서 제외하고, 체육특기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한다.
- 2) 배정원서 접수(※ 선발계획 및 제출서류는 교육과 별도 공문 시행)
 - 가) 배정원서 접수 기간: 2024. 10. 21.(월) ~ 2024. 10. 25.(금)
 - 나) 접수처: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체육교육팀

다. 보훈 대상자 자녀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지원대상자 등)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육지원)에 해당하는 지원자를, 실거주지에 맞게 지망한 중학교의 입학생 배정 정원 3%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한다.
(단, 학구위반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배정한다.)
- 2)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출신초등학교장의 신청으로,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경기동부보훈지청(보훈과)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을 거쳐 처리한다.(대상자가 아닐 경우,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배정한다.)

라. 다자녀 가구의 자녀

- 1) 중학교 입학 배정대상자의 중학교 입학년도 기준,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배정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실 거주지 중학군(구)에 속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단, 학구위반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배정한다.)
※ 거주지가 속한 중학군(구)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지, 다른 중학군(구)까지 확대하여 지정 입학 하는 것은 아님.
- 2) 시행계획 상 다자녀 가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2호 참조)
 - 가)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
 - 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
 - 다)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 라) 입양된 자녀는 친생 부모의 자녀 수에 미포함
- 3) 중학교 입학 배정대상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 자체적으로 반드시 확인 후 배정원서와 다자녀 가구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을 제출한다.

8. 기타 배정자 입학업무 처리

가. 검정고시출신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해당자(재외 귀국 등)는 일반 배정한다.

- 1) 검정고시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배정원서와 함께 제출한다.
- 2) 원서접수 마감 후 귀국, 관내 초등학교에 재취학하여 배정을 신청한 학생은 타 지역 전입자 재배정 기간에 접수하고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배정한다.

나. 취학 면제 · 유예자 처리

- 1) 초등학교장은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진학을 포기하면 보호자가 취학의 독촉 및 경고를 받는다는 점을 반드시 홍보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27조)
- 2) 유예 및 취학 면제 처리 절차는 「의무교육대상자 학적처리지침」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비진학자가 없도록 배정원서 전원 제출, 배정 후 배정중학교에 유예원을 제출하며, 초등학교 졸업 후 해외유학자도 포함됨.)

다. 부모가 교사인 학생 중, 본배정 추천 결과 부모와 같은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일 경우 희망 학생에 한하여 재배정 시, 거주지 내 다른 중학교로 배정한다.(단, 중학군 지원자에 한함.)

※ 중학군 지원자는 거주지 내 선택 가능한 다른 학교가 없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9. 배정원서 이관요청 및 파기신청

가. 배정원서 이관요청

- 1) 대상자: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배정원서를 제출하고 타 시·도(군)로 전학한 학생
- 2) 처리절차: 전 재적교(관내 초등학교장)에서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전출학생 명단 공문 발송 →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원자의 신거주지(전입학 초등학교) 관할 교육장에게 전출학생명단 공문발송
- 3) 제출기간: 전출과 동시에 공문발송(전입지역 본 배정 추천에 차질이 없도록 수시 공문발송 요망)
- 4) 제출서류: 배정원서 이관요청공문 1부 [서식 7]
- 5) 유의사항: 타 시·도(군)로 전출하려는 학생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배정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전출 조치하도록 함.

나. 배정원서 파기신청

- 1) 대 상 자: 외국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대안학교 입학 확정(미인정 대안 학교 제외) 등
- 2) 제출기간: 사유 발생과 동시에 제출
- 3) 제출서류: 교육지원청에 문의

VII. 중학교 재배정 절차

1. 재배정 대상자

- 가. 이천 외의 지역에서 중학교 배정을 받고, 중학교 입학 이전에 이천시 중학군(구) 내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 중 이천 내 중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
- 나. 2025학년도 이천시 중학군(구) 입학 배정원서 제출자로서, 배정원서를 제출한 후에 이천시 타 중학군(구)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
(동일 중학군·구 내 거주 이전은 제외)

2. 재배정 원칙

- 가. 결원이 있는 중학군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며, 추첨 후 추가 재배정을 원하는 자는 재학생의 전입학 배정원칙에 준하여 수용여력이 가능한 학교를 기준으로 배정한다.
- 나. 배정받은 후 타 중학군(구)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재배정을 받은 후에, 다시 최초에 배정 받은 중학군(구)으로 전입할 경우, 최초 배정받은 학교에 그대로 배정된다.

3. 재배정 일정

- 가. 재배정 원서 접수 기간: 2025. 1. 20.(월) ~ 2025. 1. 24.(금) 10:00~17:00
- 나. 재배정 추첨 일시: 2025. 2. 5.(수)
- 다. 재배정 추첨 장소: 이천교육지원청 별관 3층 이섭대천홀
- 라. 재배정 결과 발표: 2025. 2. 7.(금) 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4. 절차 및 구비서류

가. 재배정 신청 절차

1) 출신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서류 작성

- 가) 재배정원서[서식6] 작성(초등학교 직인 필수)
- 나) 배정포기서[서식9] 작성(초등학교 직인 필수)

2) 배정받은 중학교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작성

- 가) 초등학교에서 작성한 배정포기서 제출(포기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지참)
- 나) 배정포기 확인서 수령(중학교 직인 필수)
- 다) 배정통지서 원본 수령

3) 이천교육지원청에 서류 제출

- 가) 재배정원서 1부
- 나) 배정포기확인서 1부
- 다) 배정통지서 원본(사본 가능)
- 라) 주민등록등본 1부(전 가족 미등재 시 사유서[서식13] 첨부)

나. 제출서류

- 1)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 재배정 원서 1부 [서식 6]: 출신초등학교장 작성
※ 반드시 출신초등학교장 직인을 날인해야 함(실제 거주 이전자만 작성)
- 2) 전 가족이 등재된 신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2부(1부는 배정포기서 제출 시 중학교에 제출)
- 전 가족 미등재 시: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서식13] 1부, 관련 증빙서 1부(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확인서 등) 제출
※ 전 가족 미등재 서류는 이천에서 중학교 본배정 받은 후 이천시 내 타 중학군(구)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에 한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 3) 중학교 배정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1부(본 배정학교 통지서)
- 4) 배정포기확인서(본 배정중학교장 발급) 1부 [서식 9]
※ 배정포기서가 없는 타 사도 전입자는 배정포기를 증명하는 출신초등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

5. 유의 사항

- 가. 관내 중학군(구)간에 재배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출신초등학교장은 실제 거주 이전을 확인한 후에 재배정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배정원서 사본을 학교에 비치한다.
- 나. 중학교에서는 예비소집일에 배정통지서를 접수하여 보관하였다가, 재배정 신청자가 있을 경우 주소 이전을 확인한 후에 배정포기서를 접수하고, 배정포기 확인서와 함께 배정통지서를 되돌려 준다.

VIII. 초등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피해학생 배정

1. 관련 근거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2. 적용 대상: 이천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해당 초등학교에서 전학조치 된 가해학생

3. 가해학생 중학교 배정 절차

- 가.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배정은 학생과 가족의 주소 이전과는 무관하게 처리된다.
- 나. 교육과 협조요청을 통하여 대상자 명단을 파악한 후 해당 초등학교에 공문으로 대상자를 통보하며,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그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의 배정원서[서식12]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프로그램 미입력)
 - 1)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피해학생이 지원한 중학교의 동일 중학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중에서 추천·배정한다.
 - 2) 상급학교(중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이 재학 중인 때에는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 가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단, 가해학생이 학교가 1개인 중학구에 재학 중인 때에는 피해학생을 같은 중학구외의 이천시 타 중학군(구)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3) 일반학생 추천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일정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 입학추천관리위원장, 배정업무 담당자의 참관 하에 3개교 중 지망순위에 상관없이 무작위 추천하여 배정한다.(1~3지망교중 결원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지망학교 2개교 추가로 지망)
- 4) 추천은 학생 본인(혹은 보호자)이 직접 하도록 하되, 본인(혹은 보호자) 불참 시 배정업무담당자가 대리 추천한다.
- 5) 배정학교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대상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여 추천 당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IX. 경기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시행 2023. 11. 13.] [경기도교육규칙 제944호, 2023. 11. 13, 전부개정]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031-249-04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통합운영)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2. 전·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3. 추첨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944호, 2023. 11. 13.>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X.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및 관리 규정

[경기도교육규칙 제841호(2019. 7. 1. 일부개정)를 준용함]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3항 및 경기도고등학교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중학교 체육특기자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수정)

제2조(지원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체육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 관내 및 타·시도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 가족이 이천시 거주자이며 중학교 미배정으로 관내 중학교 1학년에 체육특기자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2. 관내 및 타시도 중학교에 재학증인자로 전 가족이 이천시 거주자이며, 체육특기자(실적·추천)의 자격을 갖춘 학생

② 제①항에 따라 체육특기자로 지원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최저학력 기준 도달 여부
2. 제②항제1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선수 출신은) 미도달 과목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여부, (비선수 출신은) 이수 계획
3. 제②항제2호에 따라 이수 계획을 제출한 학생은 추후 이수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③ 제②항제1호의 적용범위는 선발 공고일 기준 성적처리가 완료된 직전 학기로 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1. 중학교 입학 선배정 희망학생은 6학년 1학기, 재배정 희망학생은 6학년 2학기 성적
2. 중학교 2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은 특기자 선발 희망 신청 직전 학기의 성적
3. 성적을 산출하기 어려운 중학교 1학년 및 2학년 1학기 재학생은 해당 학년에서 실시한 교과진단평가 교과평균의 40% 이상, 또는 기초학력프로그램 이수 여부

제3조(선발 종목) 체육특기자의 선발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등록을 필한 종목(무용포함)으로 하며, 종목은 [표1]과 같다.

남자	여자
1. 육상, 2.수영, 3.축구, 4.야구, 5.테니스, 6.정구, 7.농구, 8.배구, 9.탁구, 10.핸드볼, 11.럭비풋볼, 12.싸이클, 13.복싱, 14.역도, 15.레슬링, 16.씨름, 17.유도, 18.검도, 19.양궁, 20.사격, 21.체조, 22.하키, 23.펜싱, 24.배드민턴, 25.태권도, 26.빙상, 27.스키, 28.근대3종, 29.롤러, 30.조정, 31.카누, 32.볼링, 33.요트, 34.트라이애슬론외 기타	1.육상, 2.수영, 3.축구, 4.테니스, 5.정구, 6.농구, 7.배구, 8.탁구, 9.핸드볼, 10.싸이클, 11.유도, 12.양궁, 13.사격, 14.체조(리듬체조), 15.하키, 16.펜싱, 17.배드민턴, 18.태권도, 19.빙상, 20.스키, 21.무용, 22.롤러, 23.역도, 24.조정, 25.카누, 26.볼링, 27.요트, 28.소프트볼 외 기타

[표 1] 체육특기자 선발 종목

제4조(선발 범위) 이천시 전체 중학교 배정 인원의 3% 범위 안에서 선발 조정하며, 다음 [표2] 단체 종목의

경우 모집정원의 3% 이내와 별개로 운영한다.

종목	승인인원(명)	종목	승인인원(명)
축구	15	농구	6
야구	15	배구	7

[표 2] 체육특기자 단체 종목 승인 인원

제5조(대회의 범위) 체육특기자로써 선발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 교육감이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및 시도 예선대회
2.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및 시도 예선대회
3. 시도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 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4. 교육장 및 시·군 단위 체육관계 공공단체장이 주최·주관하는 대회
5.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대회
 - 가. 시도 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시도간의 대회
 - 나.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한 도 단위 이상 대회
 - 다. 공공기관 또는 기타 권위 있는 단체가 주최·주관한 시·군 대회

제6조(입상 범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상 실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개인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자
2. 단체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팀의 선수와 입상하지 못한 잔여 팀중 우수 순위가 2위 이상인 팀의 선수로서 해당 경기연맹의 추천을 받은 자
3.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 입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추천 등에 의한 특기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천 등에 따라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교장과 해당 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기타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잠재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중 체육특기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자

제8조(체육특기자심사위원회 설치)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 하에 중학교입학 체육특기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중 교육장이 위촉한다.
2.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② (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자녀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소집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고 심사 과정을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0조(선발 절차) 체육특기자 등의 선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체육특기자 배정 심사 원칙)

1. 실적이 있는 자를 우선 배정하고, 정원에 미달된 경우 초등학교장이 추천한 자 중 심사 결과 서열에 의하여 배정한다.
2. 배정 희망학교 지원자의 수가 배정학교 특기 종목 배정 정원수에 미달일 경우에는 배정 희망학교에 전원 배정한다.
3. 배정 희망학교 지원자 수가 배정학교 특기 종목 배정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의한 서열에 따라 배정하되 최하위 동점자의 처리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심사기준은 직전 2년간의 각 개인별 입상한 실적에 따라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5. 입상별 점수는 [표 3]과 같다.

구 분	배 점
전국규모대회	1위-20점, 2위-18점, 3위-16점
사도대회	1위-14점, 2위-12점, 3위-10점
사·군대회	1위- 8점, 2위- 6점, 3위- 4점

[표 3] 대회 입상별 배점표

6. 체육특기자 심사를 위한 서류는 [표 4]와 같다.

구분	체육특기자(입상 실적 있는 학생)	추천체육특기자(입상 실적 없는 학생)		
제 출 서 류	• 체육특기자 심사원서[서식10-1]	1부	• 체육특기자 심사원서[서식10-1]	1부
	• 학생·학부모동의서[서식 10-3]	1부	• 학생·학부모동의서[서식 10-3]	1부
	• 전·입학학교장동의서[서식10-4]	1부	• 전·입학학교장동의서[서식10-4]	1부
	• 추천서(실적특기자)[서식 10-6]	1부	• 추천서(추천특기자)[서식 10-7]	1부
	• 학교장거주지확인서[서식 10-8]	1부	• 학교장거주지확인서[서식 10-8]	1부
	- 담임확인서(부분전입)[서식 15-1]	1부	- 담임확인서(부분전입)[서식 15-1]	1부
	•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서식 10-9]	1부	•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서식 10-9]	1부
	• 최저학력 학교장확인서[서식 10-10]	1부	• 최저학력제 학교장확인서[서식 10-10]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상실적증명서(해당종목 주관 단체 등에서 발급한 입상 실적확인, 원본대조필-교검)	1부	• PAPS 평가 결과 개인평가지(단, 승인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별도 요청)	

[표 4] 체육특기자 심사 제출 서류(전입학의 경우도 동일함)

제12조(체육 특기자의 전학) ① 체육특기자의 전학은 해당 학교의 팀 해체, 팀 창단, 체육 지정 종목의

변경, 해당종목 운동부 미등록 등의 사유 발생 시 위원회에 전학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체육특기자 자격을 가진 일반 학생이나 체육특기자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일반학생으로서 체육특기자 활동을 위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 선발 규정]에 따라 체육특기자 심사와 병행하여 전학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실적 특기자의 우선배정협조는 특기자심의위원회 회의 없이 서류검토를 통해 승인할 수 있다.)

- ③ 구비서류 : 11조의 6 참조

제13조(체육특기자 해지)

- ① 입학 후의 체육특기자의 관리(선발 및 해지)는 소속 학교장이 결정한다.

- 1.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체육특기자 활동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해지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2. 단위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 결재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과 보고

- ② 서류양식

- 1. 체육특기자 포기원
- 2. 체육특기자 해지신청서
- 3. 서식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고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학교에서 보관한다.**

- ③ 해당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 및 학교 규정에 따라 체육특기자에서 해지한 학생은 거주지 중학군(중학구) 으로 전학할 수 있다.(신설)

- 1. 체육특기자로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거주지 중학군(중학구)과 입학한 학교의 중학군(중학구)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학이 불가하다.(신설)
- 2. 체육특기자로 운동부학교에 전학한 학생의 경우 중학군이 동일하여도 원적교로 전학할 수 있다.(신설)

- ④ 체육 특기자에서 해지한 학생이 현재의 재적교에서 일반학생으로 계속 수학하고자 해당학교에 청원할 때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신청을 해당학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신설)

제14조(기타사항)

- 1. 본 기준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6. 22.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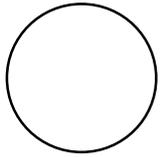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25학년도

중학교무시험입학

배정업무서식모음

[서식 1](프로그램 출력물)



← 학교번호 기입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 정 원 서 첩

졸업예정자수	명	남	명
		여	명
총 지원자수	명	남	명
		여	명
일반 학생수 (재수생수)	명 () 명	남	명
		여	명
체육특기자수	명	남	명
		여	명
특수교육대상자수	명	남	명
		여	명
쌍둥이지망 학생수	명	남	명
		여	명

() 초 등 학 교

[서식 2](프로그램 출력물)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 고유번호	
지원자	성명		성별		중학군·구		
	주소	(통학구역 조화를 위해 반드시 지번주소로 기입) 예시: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375-11				출신초등학교 전입일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년 월 일		
	학력	년 월 일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졸업예정	<input type="checkbox"/> 졸업	<input type="checkbox"/> 해외귀국
보호자 성명			연락처		지원자의 관계		
지망학교	선배정대상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체육특기자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대상자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자녀 <input type="checkbox"/> 다자녀가구 자녀				
		희망교		종목 (체육특기자만 작성)			
	일반배정대상자	1지망교	2지망교	3지망교	4지망교	5지망교	
배정순위		<input type="checkbox"/> 1순위 <input type="checkbox"/> 2순위 <input type="checkbox"/> 3순위(학구위반)					
쌍둥이 지망	<input type="checkbox"/> 첫째자녀 <input type="checkbox"/> 둘째자녀 <input type="checkbox"/> 셋째 이상			쌍둥이 형제·자매 고유번호			
<p>상기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및 제71조에 의거 수집되는 개인정보 이용·활용 및 제3자 제공(공공목적)에 동의합니다.</p> <p>위와 같이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을 희망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p>							
<p>위의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중학교 배정을 의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초등학교장(직인)</p> <p>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이천시중학교입학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p>							

※ 학생의 주소는 학교장 책임 하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학생의 실거주지와 학구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를 첨부한다.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서 제출 현황

초등학교장 (직인)

1. 중학군·중학구별 지원 현황(1지망 기준)

학군	중학교	남	여	계
이천중학군	설봉중학교			
	이천중학교			
	이천양정여자중학교			
	증포중학교			
	이천송정중학교			
효양사동 중학군	효양중학교			
	이천사동중학교			
장호원중학구	장호원중학교			
율면중학구	율면중학교			
설성중학구	이천경남중학교			
모가중학구	모가중학교			
마장중학구	마장중학교			
대월중학구	대월중학교			
백사중학구	백사중학교			
부발중학구	부발중학교			
계				

20 년 월 일

작성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초등학교

수신자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경유)

제 목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이관요청

1. 2025학년도 이천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업무 시행계획 관련입니다.
2. 본교 졸업예정자인 다음 학생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신 거주지의 중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니 기 제출한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이관요청 대상자

성명	고유번호	성별	전출학교명	전출지역	신거주지 주소 및 연락처

끝.

○○초등학교장

수신자

협조자
시행
우
전화

경기도 이천시
전송

접수

/ http://www

/ 공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 등록 상황 보고

() 중학교

배정자 총 수	등 록 현 황						미등록자 수
	일반 등록자	체육 특기자	국가 유공자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기타 배정자	등록자 계	
							미등록 인원 작성하고, 아래의 추가 사항 보고

[미등록자 현황]

성명	고유번호	출신초등학교	미등록사유	비고

배 정 포 기 서

학생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출 신 교	초등학교 () 반 () 번		
	기배정중학교	() 중학교		
보호자	주 소			
	성 명		지원자와의관계	

본인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2025학년도 ()교육지원청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한 중학교의 진학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 포기사유(해당란 괄호 안에 ○ 표) >

구 분	표 기	첨 부 서 류(배정중학교 제출용)	비고
관외로 거주지 이전	()	주민등록 등본 1통	
관내 타학군(구)으로 거주지 이전	()	주민등록 등본 1통	
해외 이주	()	해외이주 증명관련서류 사본 1부.	
입학유예신청	()	유예신청서 사본 1부.	
기타	()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임교사): (서명 또는 인)

()초등학교장 (직인)

()중학교장 귀하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절 ----- 취 ----- 선 -----

배 정 포 기 확 인 서

초등학교명	접수번호	성명	성별	배정포기사유

위 학생은 본교로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받은 학생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교 배정을 포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중학교장 (직인)

2025학년도 중학교 전·입학 체육특기자

전·입학 학교장 동 의 서

출 신 학 교 : ()학교

성 명 :

생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성 별 :

체육특기 종 목 : ()

주 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에 의거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위 학생을 ()중학교 ()종목 추천 체육특기자로 본교에 배정함에 동의하며 (전)입학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00중학교장(직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025학년도 중학교 전·입학·재학생 체육특기자

추천서 (실적특기자)

주 소 :

출 신 학 교 : 학교

성 명 : 성 별 : 남 , 여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체육 특기 종목 :

출 전 대 회 명	대회실시 년 도	입상종목	등 위	개인 및 단체경기별	비 고

상기 입상에 따른 상장 사본(원본대조필)을 첨부하여 체육특기 배정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00초등학교장(직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025학년도 중학교 전·입학·재학생 체육특기자

추천서 (추천특기자)

주 소 :

출 신 학 교 : 학교

성 명 : 성 별 : 남 , 여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체육 특기 종목 :

위 학생은 (00 종목) 선수로서 신체조건과 운동기능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된다고 판단되어 추천체육특기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00초등학교장 (직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025학년도 중학교 전·입학·재학생 체육특기자

학교장 거주지 확인서

전·입학희망교 :

생년월일 :

학생명 :

위 학생은 (00중학교 00종목) 체육특기자로 (전)입학을 요청하여 온 바, 거주지 실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 가족이 이천시 거주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부분 전입 세대의 경우

(담임확인서[서식 16-1] 제출, 근거자료는 학교 보관)

20 년 월 일

00중학교장(직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최저학력제 학교장 확인서

기본사항

학교명		학생명	
종목		성별	
지원구분	실적 특기자 <input type="checkbox"/>	추천 특기자 <input type="checkbox"/>	

최저학력제 적용 사항

적용학기	()학년 ()학기
최저학력 도달여부 (○, ×)	
미 도달 과목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문서번호 (또는 이수 계획)	

★ 작성방법:

- 최저학력 : 해당학년의 5개 교과(국, 수, 사, 과, 영)별 평균성적의 50% 이상 도달시 ○, 미도달시 × 표기
- 미도달과목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이수 문서번호 : 학교장 확인 내부결재 문서번호 기재
- 선배정 지원 대상자는 6학년 1학기, 재배정 학생은 6학년 2학기 도달여부 작성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미참여자(비선수 출신)는 이수 계획 작성 제출 후 프로그램 이수가 완료되는 대로 본 양식 재작성 제출

상기 중입체육특기자 지원 대상자에 대한 최저학력제 시행 내용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초등학교장 (직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체육특기종목 지정 및 배정인원 수 신청

() 중학교

종목	(2025)학년도 1학년 인가 학급 수	(2025)학년도 배정예정 학생 수	체육특기자 배정희망 학생 수	비 고

20 년 월 일

○○중학교장(직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

○ 주 소: (지번주소)

○ 학생성명: (년 월 일생)

위 학생은 상기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다음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전가족이 이주하지 못했습니다.

전가족미등재사유

※ 가급적 해당사유를 자세히 기술하시기 바람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록내용이 허위로 확인 또는 실제 거주지 이전이 아닌 위장 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중학교 배정이 취소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담 임

(서명 또는 인)

00초등학교장

[서식 14-1] 전 가족 미등재에 따른 확인용

담임교사 확인서	
학년, 반, 번호	
이름	
주소(지번주소)	
주민등록등본 상 전 가족 미등재 사유 및 위장전입 아님에 대한 담임교사 의견서 작성	
담임교사 (인)	
2024년 월 일	
○○초등학교장 직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담임교사 확인서

1. 학년, 반, 번호:
2. 이름:
3. 주소: (지번주소)

위 학생에 대해 ()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담임교사 (인)

2024년 월 일

○○초등학교장 직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025학년도

중학교무시험입학

배정업무질의응답

202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배정업무 질의응답

질의1 중학군에는 여러 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배정원서 작성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현재 이천 지역은 이천중학군과 효양사동중학군 2개의 중학군이 있습니다.
- 이천중학군 내의 학생은 1지망에서 4지망까지(여학생의 경우 5지망까지) 희망하는 중학교 4곳(여학생의 경우 5곳)을 작성합니다.
 - 설봉중, 증포중, 이천송정중, 이천중, 이천양정여중(여)
- 효양사동중학군 내의 학생은 1지망에서 2지망까지 희망하는 중학교 2곳을 작성합니다.
 - 효양중, 이천사동중
- 이때 특정 학교를 희망한다고 하여 일부 학교만 지망하셔서는 안 되며 반드시 1지망부터 마지막 지망까지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질의2 중학군 별 중학교 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가?

- 질의 1번을 참고하여 원서에 해당 중학군에 있는 모든 학교를 지망하여 작성·제출하시면 배정원칙에 의거하여 학교를 배정합니다.
- 배정이 이루어지면 학생은 배정받은 중학교에서 예비소집을 거친 후 안내절차에 따라 등록·입학이 됩니다.

질의3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가?

- 실제 거주지와 등재된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실 거주지를 기준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등재된 주소 상으로는 학구위반이 아니지만 실제 거주지가 학구위반일 경우는 컴퓨터 추첨시 가장 후순위(3순위)로 추첨·배정됩니다.

질의4 1지망에 지망한 인원이 중학교의 수용인원 보다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정이 이루어지는가?

- 지망 인원이 중학교 수용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배정원칙에 의하여 컴퓨터 추첨 배정합니다. (본문의 배정방법 참고)

질의5 1순위자라면 1지망한 학교에 무조건 배정 받을 수 있는가?

- 1순위자라고 하여 1지망한 학교에 100%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설봉초 학생이 설봉중을 1지망했을 경우
아미초 학생이 이천사동중을 1지망했을 경우 등
- 정원보다 지망한 1순위자가 더 많을 경우 경합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는 해당 초등학교 최종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먼저 배정하게 됩니다. 또한 최종전입일에서도 경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점, 간격수 추첨방법에 의해 컴퓨터로 배정합니다.
- ※ 시행계획 상 최종전입일: 입학, 전학, 재취학, 취학 등으로 학적 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짜

질의6 1지망 중학교에 배정되지 않으면 2지망 중학교에는 배정받을 수 있는가?

- 1지망한 학교에 배정되지 않았을 경우 2지망한 학교에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해당 중학교를 1지망한 학생들이 우선 배정되고 남은 인원만큼을 추첨하여 배정하게 되므로 2지망에 배정되지 못하고 3지망, 4지망에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의7 중학교에 배정을 받은 후 거주지를 이천시 내의 다른 중학군(구)으로 이전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 거주지를 이천 관내의 다른 중학군(구)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재배정 신청을 하면 거주지가 속한 중학군(구)의 중학교에 재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절차는 p.17 재배정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8 중학교에 배정을 받은 후 거주지를 이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 거주지를 이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 신청을 하면 거주지가 속한 지역의 중학교에 재배정을 받게 됩니다.
- 이 경우 재배정을 희망하는 지역의 재배정 일정 및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절차는 p.17 재배정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9 배정받은 중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배정을 받을 수 있는가?

- 배정받은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배정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변경을 요구하신다 해도 배정결과는 결코 번복되지 않습니다. (주로 교통, 거리, 교우관계 등의 이유)
- 타 중학군(구)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재배정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동일 중학군 내에서는 재배정과 전학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 배정받은 후 타 중학군(구)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재배정을 받은 후에 다시 최초에 배정받은 중학군(구)으로 전입할 경우, 최초 배정받은 학교에 그대로 배정이 됩니다.

질의10 학년말에 거주지를 이천이 아닌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는 어떻게 배정받는가?

- 학년말에 거주지를 이천이 아닌 다른 시·도로 이전하였으나, 초등학교는 그대로 이천 관내의 초등학교를 졸업하실 경우에는,
- 일단 초등학교가 소속한 중학군(구)의 중학교에 지망하고 본 배정을 받습니다.
- 그 후, 거주지 소속 교육(지원)청의 재배정 일정 및 절차를 알아보시고 재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